

[사 건 명] 행심 2018 - 29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05.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인천 ○○○중학교 학생으로 동급생 ●●●●에 대한 학교 폭력에 대하여 2018. 5. 1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서면 사과, 3개월간 접촉 금지, 청구인과 보호자 특별교육 각 4시간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8. 5. 29.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8. 6. 1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가던 길에 우연히 학생들이 물려있는 것을 보고 이 사건 장소로 가게 되었고, 청구인은 그 장소에서 ●●●이 ▲▲▲으로부터 뺨을 맞는 것을 목격하고 싸움에 연루될 것도 걱정이 되고 겁이 나서 그 장소를 빠져 나왔을 뿐, 직접 가해행위에 동조하여 폭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는 만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당시 현장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어 겁이 나서 선불리 만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신고할 경우 보복이나 따돌림이 두려워 신고조차 할 생각을 못했으며,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처분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많은 학생들이 있었음에도 그 현장을 지켜본 사실, 청구인은 충분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는 직, 간접적으로 가해행위를 암묵적으로 묵인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도와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행위에 해당한다.

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하였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처분 근거 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가. 2018. 4. 28. 오후 9시 20분 경 ○○중학교생인 ▲▲▲, ◀◀◀, ●●●, □□□ 및 ■■■중학교 학생들인 ◻◻◻, ⊕⊕⊕, ▣▣▣ 등 및 □□□ 중학교학생들인 ▤▤▤, ▥▥▥ 등이 ●●●과 함께 인천○○구 ○○동 소재 ◇◇도서관 공터의 벤치에 서로 몰려있었다.
- 나. 청구인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나오다가 친구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았고, 멀리서 ▲▲▲이 ●●●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으나, 겁이 나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 다. 청구인은 친구인 ◑◑◑을 만났고, ◑◑◑과 함께 ●●● 등이 있는 곳으로 갔으나, 상황은 종료가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 (2) 청구인은 도서관으로 공부하러 가던 길에 우연히 학생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고 이 사건 장소로 가게 되었고, 청구인은 그 장소에서 ●●●이 ▲▲▲으로부터 뺨을 맞는 것을 목격하고 싸움에 연루될 것도 걱정이 되고 겁이 나서 그 장소를 빠져 나왔을 뿐이고, 직접 가해행위에 동조하여 폭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는 만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사전에 이 사건 ●●●의 페이스북 계정사건과 관련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과 다수의 친구들이 만나게 되는 과정에도 전혀 관련이 없는 점, 청구인은 ▲▲▲ 등의 ●●●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비록 ▲▲▲이 ●●●을 폭행하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무리에 들어가지 않고 멀리서 잠시 보고 겁이 나서 그 자리를 떠난 점, 청구인은 ○○○을 만나 ●●●이 걱정이 되어서 다시 이 사건 현장에 간 점, 청구인이 다시 갔을 때에는 상황이 종료된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

이 없다고 할 것이다.

-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처음 ●●●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는 직, 간접적으로 가해행위를 암묵적으로 묵인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도와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의 폭행 현장을 보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다른 친구들의 가해행위를 암묵적으로 묵인함으로써 가해행위를 도와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소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만큼,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에 대하여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V.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있는 만큼,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기로 한다.